

다 듣겠습니다. 더 빨라집니다. “응답소”



서울특별시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시설공사 계약원가심사 결과 공개」 시행 안내

1.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) 및 계약심사과-13786('14.9.15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시설공사 계약원가심사 결과 공개에 관한 안전행정부 예규 개정의 주요내용과 공개방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, 각 자치구 계약 원가심사 부서에서는 '계약심사결과 공개 시행'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안전행정부 예규('14.7.31 일부개정) 개정 내용

- (주요내용) 제3장제3절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(조정사유서)를 입찰공고 시 게재하여야한다 <신설>

- (개정목적) 공사계약 원가심사의 투명성·적정성 확보와 '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'는 오해 불식

나. 공개방법 및 절차

계약원가 심사부서		계약부서
계약심사 결과(계약심사 조정 내역 및 사유서 등) 통보	→	입찰공고 시 나라장터(g2b) 등에 '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' 공개

다. 공개내용 : 공사개요, 주요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 등 (서식 참조)

※ 서식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서울시는 '14.9.22부터 공개 시행 중

붙임 1. 지방계약 예규 주요내용 1부.

2. 지방자치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(신구조문 대비표)
3. 시설공사 계약심사결과 공개서식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수신자 서구1-25

주무관

심사총괄팀장

계약심사과장

협조자

시행 계약심사과-14745 (2014.10.06.) 접수 재무과-24494 (2014.10.7.)
우 100-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/ <http://seoul.go.kr>
전화 2133-3303 /전송 2133-1032 / joy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